##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(일부)

제정 2013. 11. 27. 개정 2016. 11. 29. 개정 2021. 2. 15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·변경등록의 절차,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

- 제2조(처리기관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 이라 한다)」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(법인)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처리한다.
- 제3조(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)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 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 증 사본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(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,「고용보험법」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,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) 등을 상호대조・확인하여 처리한다.
  - 2. 기술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,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 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- 제4조(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)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 보고서상의 진단의견(적격, 부적격, 진단불 능 등)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며, 기업진단자 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한다.
  - 2. 기업진단자는 제9조에서 정의한 진단자를 말한다.
- 제5조(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) 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사무실은 「건축법」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·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.
  - 2. 다음 각 호의 건물 중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  - 가.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
    - 나. 축사, 퇴비사, 온실, 저장고 등 농업·임업·축산·어업용 건물다.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
  - 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,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.
  - 4.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사무실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 - 5.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「건축법」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 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

-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.
- 6. 사무실은 다른 산림사업법인 또는 타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될 시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하며, 산림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.
- ②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.
  - 1.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(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)에 한하여 건 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.
  - 2. 각종 공부(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, 등록증, 등기필증) 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대조하여 확인한다.)
- ③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·전화번호·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6조(등록 통보 등) 시·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
  - 1. 산림청, 타 시·도,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
  - 2. 「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」의 「산림사업법인 등록」에 등재·관리